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신탁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

1. 「지방세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아래 표지된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귀하(귀 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의 표시								
위탁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 납 내 역	과세연도	구분	세목	과세번호	계	지방세	가산금	납부기한(당초)
	체납처분비							
	합계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자)	신탁회사명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부할 세액							
	산출근거		※ 납세고지서 참조					

붙임 납세고지서 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